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
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 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이○우	99.10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연락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(반송)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서비스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2.11.17.~2022.12.02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양주고용복지+센터 이정화(☎ 031-849-23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1. 1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